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

함하도록 함.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 이전 ·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의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2. 기본계획 추진 재원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현황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현황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해외 기술·산업·정책 동향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필요한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4. 연구·시범운행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주민의견의 수렴과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과 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5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최초 지정 당시 노선의 연장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5.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5조제7항제1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중 하나(이하 “자동차등록증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하는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하는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중 하나(이하 “자동차등록증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가용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2. 자가용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의 여객운송계획서에 따라 운행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의 원본 또는 사본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하는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

스운송사업

⑤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

스운송사업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하는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

실을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확인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승인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취소를 감수할 것
3.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에 따를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

지·관리의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제12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운행과 관련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토교통부

4. 경찰청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는 자와 법 제19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자(이하 “책임보험가입자”라 한다)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일 전일까지

2. 법 제19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려는 자: 연구·시범운행일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허가 또는 면허,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책임보험가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17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정비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및 변경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밖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지능형교통체계

협회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연 락 처	(044) 000 - 0000